

〔註〕

(1) ① 파리條約項中, ○는 加入을, ×는 未加入을 表示

(2) ② 特許法 項中, ○는 特許法이 「有」, ×는 「無」이고, 또 △는 他國의 特許法을 適用하고 있음을 表示

(3) ③ 出願人의 資格 項中, ◎는 「發明者 및 承繼人」이 出願을 할 수 있음을, ○는 「發明者만」이 出願할 수 있음을, 또 △는 例外規定이 있음을 表示(備考參照). 여기서 「發明者만」이라고 함은 發明者(또는 그 相續人) 外에는 特許出願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따라서 出願前에 發明이 他人에 양도되어 있는 경우라도, 出願人名은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의 名義에 의할 것이 要求되고 다만 양도증을 첨부해서 出願을 해 두면 特許證이 양수인에게 交付되게 된다.

(4) ④ 審査의 項中, ○는 「審査主義」를, ×는 「無審査主義」를 取하고 있음을, 또 △는 例外規定이 있는 것을 나타냄.

(5) ⑤ 新規性判斷基準의 項中, ○는 「國外國公知公用·內外國刊行物」을, □는 「國內公知公用·內外國刊行物」을, △는, 「國內公知公用·國內刊行物」을 각기 基準으로 하고 있음을 表示함.

(6) ⑥ 存續期間의 項中, 「起算日」의 項에서, 「出」은 出願日을, 「許」은 特許日을, 「公」은 公告日, 「完」은 完全明細書提出日을 각각 存續期間의 始期로함을 나타낸다. 또 「期間」의 項에서 「延」이 있는 것은 期間延長을 나타냄.

(7) ⑦ 特許의 對象이 되지 않는 發明의 項은 項中記載된 物質 그 자체의 特許發明을 許與하지 않는데 그치고, 그 製法은 무엇이랴도 特許對象으로 된다.

※은(1) 發見, 科學의理論 및 數學의方法 (2)

美的創作物 (3) 게임, 商業的方法 및 컴퓨터프로그램 (4) 情報表現形式 (5) 動·植物의 變種을 나타냄.

(8) ⑧ 出願公告의 項中, 月 또는 日數의 表示는, 모두 公報 또는 官報等에 公告後의 公告期間, 따라서 그 期間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냄.

(9) ⑩ PCT(特許協力條約) ○는 署名國, ◎는 加入國, △는 批准國을 나타내고, ×는 未加入을 나타냄.

(10) ⑪ EPC(歐州特許條約) ○는 署名國, ◎는 批准國을 나타내고, ×는 未加入을 나타냄.

(11) ⑫, ⑬에서 「無」는 制度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12) ⑭ 備考의 項中, 特은 特異한 特許制度를 나타냄, 當該項中

▲ 「發明者證」은 소련等 社會主義國에서 採用되고 있는 것으로 發明에 對해서는, 이 「發明者證」 또는 特許(資本主義國의 그것과 同一)중 어느것인가 出願人의 選擇에 의해, 附與되는 것이나, 「發明者證」을 附與받은 때는, 그 實施權은 國家에 法律上 當然歸屬되는 것으로 되고, 被交付者는 單純히 「報酬」「所得稅減免等의 特典」이 附與되는 것에 불과하다. 東獨의 「經濟特許」도 上記 發明者證과 類似한 것이다.

▲ 「輸入特許(또는 「確認特許」)라 함은 外國特許를 가진 者가, 그 外國特許의 殘存期間中 언제라도 「輸入特許(또는 「確認特許」)制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에 對해 特許出願을 할 수 있는 것이며, 出願審査에 對해서는 一般의 新規性判斷基準이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함.

▲ 「發見者證」은 自然界의 重要한 法則, 特性現象을 發見, 確認한 者에 交付된다.

▲ 「合理化提案者證」은 小發明을 保護하는 制度이다.

▲ 假特許

〈金亨昊 記〉

工業所有權制度便覽(1)

特 許 制 度

州 名	國 名	① 條 約	② 特 許 人 의 資 格	③ 出 願 의 資 格	④ 審 査	⑤ 新 規 性 判 斷 基 準	⑥ 存續期間		⑦ 特許의 對 象 이 는 發 明	⑧ 出 願 議 公 申 請 (月)	⑨ 實 施 義 務 (年)	⑩ P E C P T C	⑪ 公 開 制 度	⑬ 審 査 請 求 (年)	⑭ 備 考	
							起 期 間 (年)	算 日								
	(東南아시아)															
	아프가니스탄	×	×													
	印度 (1970年法)	×	○	○	○	□	特 (註 4)	14 (註 1)	化學物質 醫藥, 食 物(註 2)	4	3 (註 3)	×	-			假明細書制度가 있음(12個月以內에 完全明細書提出) 註 1) 食料品, 醫藥의 製造方法特許는 特許日로부터 7年 또는 特許證發行日로부터 5年中 먼저 滿了하는 期間이 存續期間이다. 註 2) 不特許事由 ① 科學的原理의 發見, 抽象理論 ② 公知物質의 新規한 性質 또는 用途發明 ③ 단순한 混合에 의한 物質 ④ 農藝 또는 園藝의 手法 ⑤ 外科 또는 治療方法 ⑥ 原子力에 關한 發明 註 3) 輸入은 實施로 보지 않음 註 4) 1912年 1月 1日以後의 印度出願을 先願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	×													
	베트남	○	○	○	○	○	出	15	醫藥品, 化學物質 食物(註 5)	無	無	×	-			(特) 發明者證 註 5) 發明者證은 可, 1981年 1月 23日로부터 新法施行 1955年 特許法施行令
	캄푸치아 (1979年法)	×	○	○	×	○	出	5, 10, 15, 20	-	無	3	×	-			
	스리랑카 (1979年法)	○	○	○	○	□	特	15		無	無	○	-			
	타일랜드 (1979年法)	×	○	○	○	□	出	15	醫藥, 食 物, 農業 用機械	公開로 부터 180日	3	×	-			○ 5年 (形式要件을 滿 족시킨 後)

中	國	○	○	○	○	□	出	15	醫藥, 化學 藥物, 質, 飲料	3	3	×	○	3年 (出願으 로부터)	存續期間은 出願으로부터 18年限度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이 英國特許日로부터 5年以內 에 出願(유렵特許로서 英 國을 指定한 것을 包含) (特) 植物特許 註 6) 醫藥, 農藥特許는 最長 5年間 延長可能, 但, 殘存期間과 延長期 間의 合計는 醫藥承認이 農藥登錄으로부터 15年 을 限度로 한다.
臺	灣	×	○	○	○	○	公	15	食品 食物	3	3	×	○	3年 (出願으 로부터)	
홍	콩	○	△	△	△	-	英國 特許權 殘存期	-	-	-	無	○	-	-	
大	韓	○	○	○	○	□	公	15 (註 6)	食 物	2	3	○	○	5年 (出願日 로부터)	(特) 發明證 存續期間은 出願 20年限度 情報提供制度, 審査前置制 度, 國內優先權制度 있음 註 7) 醫藥, 農藥特許는 最高 5年間 延長可能
아	北	○	○	○	○	□	公	15 (註 7)	-	無	3	○	-	-	
日	本	○	○	○	○	□	公	15 (註 7)	-	3	3	○	○	7年 (出願日 로부터)	假明細書制度 있음(9個月 以內에 完全明細書 提出) 인도特許權이 有效
베	팔	×	○	○	○	△	特	15	-	-	無	×	-	-	
파	키	×	○	○	○	△	特	16 延 5 또는 10	-	-	4	4	×	-	
버	마	×	×	-	-	-	-	-	-	-	-	×	-	-	
방	글	×	○	○	○	△	特	16 延 5 또는 10	-	-	4	無	×	-	
시	팔	×	○	○	○	□	特	15 (註 9)	動植物의 變種, 動 植物의 生物學的 育成方法	無	3	×	○	註 8) 但, 파리條約과 同 樣의 優先權이 認定된다 註 9) 經過措置에 따른 確 認登錄은 英國의 存續期 間 또는 出願으로부터 20年中 빠른 것으로 한 다. 註 10) 豫備審査의 請求는 出願으로부터 6個月	
싱	가	×	△	△	△	-	(英國特許 權의 殘存 期間)	※	※	無	3	×	○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가 능. 英國特許日로부터 3年 以內에 出願(유렵特許로서 英國을 指定한 것을 包含)	
라	오	×	△	○	○	○	出	20	※	無	3	×	○	佛法準據	
핀	리	○	○	○	○	□	特	17 (註 11)	※	無	3	○	○	(特) 植物特許 註 11) 不特許事由 ① 科學的 理論 ② 商業的 方法 ③ 單純한 醫師의 處方 以上의 것이 아닌 醫 藥混合物	
아	(中	×	×	×	×	×	×	工業所有權制度를 가지고 있다. 主要新 聞에 警告의 告示를 함으로서 保護를 받 는다.	※	無	3	×	○	出願人的 資格中 發明者와 共同出願이 可能 註 1) ① 治療處置方法 ② 植物 또는 動物 의 新種	
이	스	○	○	○	○	○	出	20 (註 1)	(註 1)	3	3	○	○		
이	라	○	○	○	○	○	出	15	醫 藥 (註 2)	無	3	×	○	(特) 輸入特許 註 2) 會計에 使用하는 方 法, 建築設計計劃 및 그 에 관한 圖面	

아시	이 란	○	○	○	×	○	△	出5, 10, 15, 20	醫藥 (會計調査表)	無	5	○	—	(特) 輸入特許, 登録後 3년 이내 特許取消을 제1審裁判所에 申請할 수 있다.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가능. 英國特許日로부터 3年以內에 出願 出願人的 資格中, 發明者와 共同出願이 가능 註 3) ① 會計上의 手段, 編成 ② 醫藥處方 (特) 輸入特許. 登録後 3년 이내 特許取消을 裁判所에 申請할 수 있다.
	쿠 웨 이 트	×	○	○	×	△	出	15 延 5	醫藥, 植 物	2	3	×	—	
	프 키 로 스	○	○	△	△	—	—	(英國特許權의 殘存 期間)	※	無	無	×	—	
	사 우 디 아	×	×	—	—	—	—	—	—	—	—	—	—	
	아 라 비 아	—	—	—	—	—	—	—	—	—	—	—	—	
	요 르 단	○	○	○	○	△	出	16	無	2	3	×	—	
	시 리 아	○	○	○	○	×	○	出	15	醫藥 (註 3)	無	2	○	
아레 바	어 키	○	○	○	○	○	出	5, 10, 15	醫藥	無	3	×	—	
	레 바	○	○	○	×	○	出	15	醫藥 經 시 스 템	無	2	×	—	
오세아니아	호 주	○	○	○	○	△	完	16 延 5 또는 10	食物 (公知成分의 單純한 混合物로 된 醫藥)	3	3	○	—	5年 (完全明細書 提出日로부터) (18個月) 뉴기니아, 노르포크島에도 保護效力미침, 나우루共和國에 있어 保護는 오스트레일리아 特許日로부터 3年以內에 出願할 必要가 있음. (特) Petty Patent (1979年 7月 1日로부터) 쿠크諸島 및 토켈라우諸島에도 保護의 效力이 미침
	뉴 질 랜드	○	○	○	○	△	完	16 延 5 또는 10	3	3	×	—		
아프리카	이 집 트	○	○	○	×	△	出	15 延 5	醫藥, 食 物	2	3	○	—	存續期間中 食品醫藥物質의 化學的合成法에 관한 特許는 出願日로부터 10年으로 期間延長은 認定되지 않음. (特) 發明者證, 確認特許 註 1) 確認特許 (出願으로부터 10年)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가능. 英國特許日로부터 3年以內에 出願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가능. 英國特許日로부터 3年以內에 出願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局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가능. 英國特許日로부터 3年以內에 出願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局 (特) 輸入特許
	알 제 리	○	○	○	×	○	出	20 (註 1)	動植物의 新種	無	3	○	—	
	우 간 다	○	○	○	×	—	—	(英國特許權의 殘存 期間)	※	無	無	×	—	
	이 디 오피 나	×	—	—	—	—	—	—	—	—	—	×	—	
	가 봉	○	○	○	×	○	出	10	醫藥	無	無	×	—	
	오 토 볼 타	○	○	○	×	○	出	10	※	無	3	×	—	
	카 메룬	○	○	○	×	○	出	10	※	無	3	○	—	
	기 니 야	○	○	○	×	○	出	20	—	無	3	×	—	
	케냐	○	○	△	×	—	—	(英國特許權의 殘存 期間)	※	無	—	×	—	
카공자	콩 고	○	○	○	×	○	出	10	※	無	3	○	—	
	자 이 레	○	○	○	×	△	出	20	—	無	(註 2)	×	—	

	잠 비 아	○	○	○	●	×	□	出	16 延 5	-	3	3	×	-
	시 에 라 리 온	×	○	△	△	-	-	(英國特許 權의 殘存 期間)	20	科學的 原理見 ※	無	3	○	-
	수 단	○	○	○	●	×	○	出	10	※	無	3	○	-
	세 네 갈	○	○	○	●	×	○	出	10	※	無	3	○	-
아	코 트 디 브 아르	○	○	○	●	×	○	出	10	※	無	3	○	-
	소 마 리 아	×	○	△	×	○	○	出	15	醫 藥	無	3	×	-
	베 닌	○	○	○	●	×	○	出	10	※	無	3	○	-
	탄 자 니 아	○	○	△	×	-	-	(英國特許 權의 殘存 期間)	10	※	無	無	×	-
프	차 드	○	○	○	●	×	○	出	10	※	無	3	○	-
	중앙아프리카 공 화 국	○	○	○	●	×	○	出	10	※	無	3	○	-
	튀 니 지	○	○	○	●	×	○	出	20	醫藥, 食 物	2	2	×	-
	토 고 (1971年 12月 1日)	○	○	○	●	×	○	出	10	※	無	3	○	-
	나 이 지 리 아	○	○	○	●	×	○	出	20	植物, 動 植物의 新 種	無	3	×	-
리	니 제 로	○	○	○	●	×	○	出	10	※	無	3	×	-
	브 룬 디	○	○	○	●	×	△	出	20	-	-	2	×	-
	마다가스카르	○	-	-	-	-	-	(不 明)					○	
	말 라 위	○	○	○	●	×	△	完 延 10	16 또는 5	食 物, 醫 藥 (單純 混合 한 物)	3	3	○	-
카	말 리 (1952年)	×	△	○	×	○	○	出	20	醫 藥	無	3	○	-
	남 아프리카 공 화 국 (1978年法)	○	○	○	●	×	○	完	20	※	無	3	×	-
	보 르 와 나	×	○	○	×	○	○	完	16	※	3	3	×	-
	트 란 스 카 이	×	○	○	×	○	○	完	16	※	3	3	×	-
	벤 다	×	○	○	×	○	○	完	20	※	無	3	×	-
	모 리 타 니 아	○	○	○	●	×	○	出	10	※	無	3	○	-
모	舊스웨덴 領 地 域	×	-	-	-	-	-	(不明)		-	-	-	×	-

註 2) 醫藥, 食物特許는
特許日로부터 4年 그 밖
에는 出願으로부터 5年
또는 特許日로부터 3年
(輸入特許는 出願로부터
3年)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가
능. 英國特許日로부터 3年
以內에 出願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 가
능. 英國特許日로부터 3年
以內에 出願(유리特許에서
英國을 指定한 것도 包含)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特) 輸入特許
1976年 12月 31日에 아프
리카·마다가스카르 同盟
에서 脫退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假明細書制度있음 (12個月
以內에 完全明細書 提出)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독립(1977. 12. 6)
" (1976. 10. 26)
" (1979. 9. 13)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
(OAPI)에 加盟, 共同特許
局

모로코全域에 權利를 取得
하기 위해서는 여러 地域
에 出願해야 한다.

로 코 리 티 루 집 모	프랑스	○	○	○	×	○	出	20	醫藥	無	3	×	—			
	영국	○	○	○	×	○	出	20	醫藥	—	3	×	—			
	미국	○	○	○	×	○	出	15	醫藥, 食物	食無	2	3	×			—
	독일	○	○	○	×	△	出	延 5								
	일본	×	○	○	×	△	特	20	無	無	3	×	—			(特) 輸入特許
	호랑	○	○	○	×	○	出	20	無	無	2	×	—			
	중국	○	○	○	×	○	出	20	—	3	3	×	—			
러시아	○	○	○	×	△	出	14	—	1	無	×	—				
유 림	아이슬란드	○	○	○	×	□	特	15	藥品, 飲料, 食物, 單純混合物	12週間	5	×	×			
	아일랜드	○	○	○	○	完	延 5 또는 10	16								3

(계속)

特許廳·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實施 勸獎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와 職務發明補償制度實施는 비단 大企業뿐만 아니라 大企業과의 競争에서 이기고 나아가 中堅企業 또는 大企業으로 跳躍하려는 中小企業에게는 더욱 必要한 制度인 것입니다.

날로 熾烈해지는 國內外 競争與件속에서 企業經營戰略의 要諦는 持續的인 自體 研究開發을 통한 技術革新과 新製品 開發이 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企業의 經營實情에 맞는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의 採擇과 效率的 運用은 큰 도움이 될 것임을 確信합니다. 아울러 이미 이 制度들을 採擇하여 實施하고 있는 企業은 制度의 改善 및 補償金의 引上等 制度運營을 더욱 活性化 함으로써 어려운 經濟環境 속에서 企業의 繁榮을 기하고 나아가 國家産業發展을 위한 積極的이고 獻身的인 參與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貴社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案) 月刊 「發明特許」 原稿募集 (內)

本誌는 讀者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工業所有權 專門誌입니다. 本誌는 製作에 讀者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工業所有權에 관한 內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 바랍니다.

◎ 接受期限: 수시접수

◎ 接受處: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部 「月刊 發明特許」 編輯室

신 간

한 국 특 허 제 도 사

안 내

▲ 규 격: 4·6배판, 900면

▲ 가 격: 14,500원

▲ 발행처: 특 허

청 (Tel 568-8151~64)